

특집논문

2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A Role of Christianity in Solving the Problems
of Migrant Workers

김기원(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II. 이주노동자의 실태

III.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의 내용

IV. 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개입논리

1. 성서적 근거

2. 기독교의 이주노동자 복지 개입논리

1) 전통적 선교관에서의 개입

2) 통·전적 선교관과 기독교의 개입

V.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1. 가치판단자

2. 이슈제기자

3. 서비스제공자

4. 사례관리자

5. 프로그램개발자

6. 사회교육자

7. 재원조달자

8. 자원봉사관리자

9. 복지정책 형성과정 개입자

1)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2) 사회복지 대안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3) 사회복지 대안체택과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환류

6) 사례분석 : 조선족교회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조선족교회의 역할

VI. 결론

A Role of Christianity in Solving the Problems of Migrant Workers

by Kiweon Kim

Recently it is widely said the modern welfare state reach a crisis especially in western states. As one of alterative solutions to the crisis of welfare state, informal welfare state is presented,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christian agencies.

A migrant worker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In the Bible, a needy migrant worker is called as the least of persons.

we christians assure that through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Christ has made us one people. Even though we were born in different countries and brought up in different culture, there is only one body and one Spirit. All person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or social status, are entitl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basic quality of living,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If we discriminated migrant workers and excluded them from our society because they are not born in Korea, we did commit a sin. As a social repentance, christians are to participate in the voluntary activities to promote welfare of needy migrant workers and protect basic human right.

In doing so, christians rely on the word of the living God as supreme and reliable guide. God is the defender of the poor. Faithful obedience requires that we share God's concern and act on it. It is a kind of true worship. He who oppresses a poor man insults his maker, but he who is kind to the needy honors Him. If we persecute

needy migrant workers, we persecute God. If we show hospitality to them, we honor Him.

In order to do biblical justice to migrant workers and restore them Imago Dei which was lost, christians are to perform christian welfare programs which alleviate their pain and break the causes of their pain. In the process christians can play such roles as value-judge, issue-initiator, service-provider, case manager, program developer, social educator, fund raiser, volunteer-management, intervener in the process of welfare policy.

Key words: 아젠다형성자, 복지정책형성과정, 기독교의 역할, 사례분석,
조선족 동포

I. 서 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회복지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독교기관들이 복지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그 후부터 기독교기관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기독교기관의 역할상실(role loss)은 기존의 복지체계에 일종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공백을 국가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메우게 된다. 이 이후로 국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독교기관은 국가의 주된 역할을 보완해 주는 소극적 주체로서의 역할 담당자로 남게 된다. 사회복지가 성역에서 속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복지가 점차 세속화(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제공 주체로서 기독교기관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들의 세금에 기초해 복지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부담은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국가가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정통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자 이를 대처할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복지제공주체를 다원화해 보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내지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복지의 혼합경제에서는 공공분야, 자원봉사분야, 민간분야, 비공식적 또는 가족 분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Wistow, et. al., 1995:32) 이들 다양한 복

지재공주체들 가운데서도 비정부 분야의 복지제공 역할을 강화해 보려는 복지사영화(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주장이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기관이나 기업 등의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즉,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우세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우위적 복지국가(state dominant welfare state model)에서 자원봉사 영역이나 비공식 영역이 상당한 역할을 행하는 자원봉사영역복지국가(voluntary sector welfare state)내지 비공식복지국가(informal welfare state)가 대안적으로 대두되고 있다.(Healy, 1998:4-6)

이와 같이 복지국가의 기준에 따른 대안적 복지국가 모형이 제시가 되는 오늘날 기독교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 직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서적 정의가 지상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하에서 기독교는 교회, 기독교기관, 교인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검토한 후, 그들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기독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한다.

II. 이주노동자의 실태

UN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조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주노동자에는 이주노동자로 그 거주지를 인접국에 두고서 보통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변경노동자(frontier worker), 이주노동자로 일이 계절적인 조건에 의한 특성을 갖고, 연중 한정된 기간동안만 취로하는 계절노동자

(seasonal worker), 이주노동자로 고용되어 외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해서 취로하는 항해노동자(seafarer), 이주노동자로 국적을 갖지 아니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근해시설에 고용된 근해시설노동자(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이주노동자로 어느 한 나라에 주소를 갖고 일의 성질상 단기간 다른 나라들에 나갈 필요가 있는 순회노동자(itinerant worker), 이주노동자로 취업국에 의해 고용자가 그 나라에서 행하는 특정의 사업에 한해 취로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의 입국을 인정받은 사업연계 노동자(project-tied worker), 이주노동자로 (i)고용자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취업국에 파견되어 의뢰받은 특정의 직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거나 취업국의 고용자의 요구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임시적 또는 단기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이어서 그 체재기간이 만료하던가 혹은 이들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출국해야 하는 특별취업노동자(specified-employment worker), 이주노동자로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 활동에 단독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가 있다.¹⁾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는 해외합작투자기업 연수생인 현지법인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유입된 산업기술연수생(D-3)인 산업기술연수생, 관광 친척방문 등으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거나 해외합작투자 기업연수생,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작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중국에서 비자 없이 밀입국한 미등록이주노동자, E6(연예인비자)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댄서나 성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하게 나타난 80년대 중·후반부터 불법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그 숫자가 급증하자 이 문제를

1)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the Human Right,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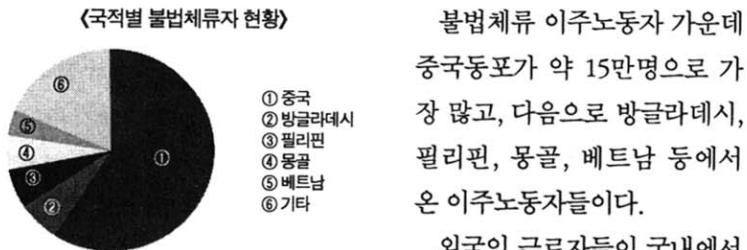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연수생제도는 명시적 목적인 산업연수가 아닌 잠재적 목적인 저임금노동력 공급으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권압류, 감금노동, 사업장내 폭행, 저임금, 질병,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조악한 주거환경 등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우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연수생 가운데 상당수는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상태로 노동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권단체들이 1996년말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내에 들어와 노동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노동허가를 해주고, 국내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해 주어 이주노동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면하여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 한때 우리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여 전원 강제출국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독교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받아 강력한 국제적 저항을 반기기도 하였다.³⁾

이주노동자는 1993년 2만명의 산업연수생이 입국한 이래 국내에 들어온 이래 2002년 현재 336,800명이 체류중이며, 이 가운데 78.9%인 265,8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 89,000명이며, 이들 산업연수생 가운데 약 37,000명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연수와 취업중이고, 나머지 52,000명은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다.

2) 이란주, 한국내 이주노동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2002.

3)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Struggle: Migrant Workers In Korea, OCAP, 2002.



받는 월 평균임금은 80만3천원으로 본 국에서의 임금 11만4천원에비해 7 배 가량 높았다. 임금 차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6.4배), 인도네시아(6.3 배), 파키스탄(11.3배), 방글라데시(12.2배), 몽골(14.2배) 등으로 6~14 배의 차이가 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비제조업부문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취업자의 다수가 비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까지 대거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해감에 따라 소위 혼잡 효과(crowd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밀려들어옴(crowding-in)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가는 현상(crowding-out)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연수생은 822천원 인 데 비해 불법취업자는 85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의 경우 불법 취업자는 월평균 240시간인 데 비해 연수생은 276시간에 달해 연수생이 불법취업자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연수생들의 직장 이탈을 촉진시켜 그들이 불법체류이주노동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방안으로는 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는 이미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와 노동허가제도를 비교하면 국내 사업주의 이익과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

의 상대적 용이성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업주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입국허가를 해주는 고용허가제도가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된다.⁴⁾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대안을 채택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대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⁵⁾

불법취업 이유에 대해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35.4%),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17.5%), 일이 너무 힘들어서(14.1%)라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55.7%,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65.4%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189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조선족, 한족,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출신 74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가운데 전체의 44%가 고용계약 위반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위반내용 가운데 임금액수 관련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임금 지급일 불이행(40%), 초과근로수당 미지급(33.6%)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용계약 위반을 당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를 상담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28.3%는 작업중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22.6%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사의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29%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인 상사 또는 동료한테서 욕설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40%, 여권 압류를 당한 노동자는 36.9%에 이르렀다. 폭행 체벌을 당한 노동자는 9%, 성희롱도 1.8%로 나타났다.⁶⁾

4) 유길상 &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5) 정경준 & 정용관, 외국인근로자 20만명 내달 강제출국 면할 듯 -여야, 고용허가제 통과 합의, 동아일보, 2003. 7. 3.

6) 석현호, 외국인노동자 4년간 노동실태조사, 한겨레신문, 2003.6.20.

III.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의 내용

1990년 12월 18일,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출신국이 아닌 취업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⁷⁾ 이 협약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건전하고, 공평하고,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상황(sound, equitable, humane and lawful conditions)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기초하여 U.N.은 일자리, 임금, 사회보장 그리고 노동조합결성권에 관해서 이주근로자들이 취업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18일을 “국제이주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공포하였다.⁸⁾

이들 협약의 내용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중진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다. 협약의 내용 가운데 제3장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8조-35조)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도 포함해서 어느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으며, 언제라도 출신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7)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the Human Right, 1990.

8) Derry McKeever, Migrant worker rights adopted by UN, Chatham-Kent Times, 2002.12.17.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문을 받거나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을 받거나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족, 주거, 문서 혹은 기타 통신에 대해 자의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명예나 명성을 공격받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의 조치는 금지되며, 추방은 개별적으로 심리를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보수 등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는다.
-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조합 및 법률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기초해서 설립된 조직의 집회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노동조합 기타 조직에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기타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 사회보장에 관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 적용되는 법 률 및 쌍방간 그리고 다국간 조약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는 취업국 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소관관청은 본항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협약을 행 할 수 있다. 국내법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나라는 같은 지위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처우를 기초 로 해서 그 사람이 행한 각출상당액을 상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제 27조)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명의 유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의료는 그 사람이 재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제28조)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이 재류 내지 취업이 비정규이거나 취업국에서의 그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출신국과의 문화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 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국에서 노동조합 기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의 공공의 사항에 참가하고 그 나라의 선거가 있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사업,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사업,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 및 제도, 주택, 사회·보건사업, 협동조합사업 및 자주관리사업, 문화활동사업의 이용·참가에 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수입 및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임금을 취업국에서 출신국 또는 기타 나라에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 재류와 취업허가의 규정하는 바 이주노동자는 해고로부터의 보호, 고용보험, 실업대책사업에의 참가, 실업 내지 취업이 종료할 때의 전직에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다.

IV. 복지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개입논리

기독교기관들이 이주노동자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정에 개입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는 우선적으로 성서적으로 합리화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기독교기관들이 어떠한 선교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교관은 크게 전통적 선교관과 통전적 선교관으로 나뉘어 진다. 각각의 선교관을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입활동에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 선교관에서는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통전적 선교관에서는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⁹⁾

1. 성서적 근거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주노동자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대하였고,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기독교는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방나그네를 환대하기도 하였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는 이주노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며, 그들도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노동에 종사하여야 하는 사람

9)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8:49-54.

임을 가르치고 계신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오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주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우리와 꼭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전통은 교회의 이방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사랑의 나눔의 차원에서 이방 나그네를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려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¹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창1:27-28)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로, 이날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휴일로 삼고 일을 멈추는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Sabbath)을 내국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허락하셨다. 안식일에는 아주 노동자들도 안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식일에까지 이들에게 노동을 시킴으로써 안식하지 못하게 노동착취는 일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창 2:3)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11) “너는 육 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10) 대한성서공회, 한영성경전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대한성서공회, 1987.

제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23:1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13)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4)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31:15)

이주노동자들은 성경의 이방나그네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하지말고, 자국인같이 여기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출22:21)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례20:33-34)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신10:19) “매 삼년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각출하여 너희 성읍에 저축하고 분깃(allotment:분할 대여된 농지)이나 기업(inheritance)이 없는 레위 사람과 성종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여호와 네 하느님이 너희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신14:28-29)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슥 7:10)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

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신24:4-5) “이방인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훌리지 말라.”(렘22:3)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향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렘22:13) “감독은 채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울 잘하며”(딤전3:2)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31-46)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게 보거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2:14-26)

2. 기독교의 이주노동자복지 개입논리

궁핍한 이주근로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에 기독교가 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논리는 당위론과 현실론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기독교가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당위론과 기독교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으로 구분되어 진다. 당위론에 따르면, 기독교의 복지사업 참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노력이자, 기독교가 바로 서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함으로써 절대자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구현되는 것이며, 기독교복지사업은 이러한 교리를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현실론에 따르면 기독교복지사업은 기독교가 정체성을 타개하거나, 성장을 위한 도구이거나, 사회적 비난에 대처하거나, 사회적 위기에서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를 털 세속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¹¹⁾

이러한 당위론과 현실론의 논쟁과는 달리 선교신학적 관점에서는 전통적 선교관과 통전적 선교관에서 이주근로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기독교의 개입논리를 설명하고 있다.¹²⁾

1) 전통적 선교관에서의 개입

전통적 선교관에서는 선교는 전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선교관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

11) 김기원,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종교와 사회복지, 한국종교제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2000.

12)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한율, 1992:35-48.

는 것은 선교영역밖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된 의미 속에서 실행되어야 할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기독교의 본분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는 것이므로 기독교가 복지정책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인간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다. 둘째, 기독교가 복지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성도들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셋째, 기독교가 복지정책형성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입활동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 넷째, 전도와 기독교사회복지와의 관계는 씨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 교회가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변화된 그들이 기독교의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므로 기독교가 복지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섯째, 말세론이다. 말세가 가까운 이 시기에 우선 시급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구원이므로 기독교가 복지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할 시간이 없다. 여섯째, 육체, 사회, 이 세상보다 영혼, 개인, 저 세상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 세상에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가 복지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경시하고 있다.

예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지만 모든 배고픈 사람을 먹인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었지만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 준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의 사역의 일부이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보다 큰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사도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다.¹³⁾

2) 통전적 선교관과 기독교의 개입

통전적 선교관에 따르면 선교란 전도와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전도와 사회봉사는 상호 대등하면서 동역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전적 선교관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두 기독교가 실천해야 할 근본사명이며, 기독교인은 인간 개인의 구원과 사회구원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 원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최근 이러한 통전적 선교관의 입장을 취하는 기독교 선언들과 학자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전적 선교관은 20세기 초 ‘대반전(The Great Reversal)’이라고 불리는 복음주의자들의 반사회참여적인 태도가 변화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대반전의 반전(Reversing the Great Reversal)’을 맞이하게 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따라 1966년 미국의 휘튼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싸울 것을 촉구하는 휘튼 선언(Wheat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고, 1974년 로잔느 회의(Lausanne Congress)에서는 사회구원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을 나타내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선교에 대한 책임을 본격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되었다.¹³⁾ 이 회의에서 채택한 로잔느 협약(Lausanne Covenant)의 내용 가운데 통전적 선교관을 나타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심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3) Tony Evans, Church Social Ministry, <http://heritage/nov96/Evanshtml>

14) Tony Lane, Christian Thought, 김용국 역, 기독교사상사,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8:81-83, 515-519.

인간 사회를 통한 정의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온갖 압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 복음운동과 사회적 관심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을 참회한다..... 우리는 복음운동과 사회-정치적 참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의 하나임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두 교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모두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우리 모두는 수백만의 가난한 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으며, 그것을 야기케 한 불의들로 인해 경악을 느낀다.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은 구제와 복음 운동 양자에 훨씬 활기차게 기여하기 위해서, 소박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킬 우리의 의무를 수락한다.”(로잔느 협약 5절 & 9절) 이어서 1982년 미국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통전적 선교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첫째, 교회가 복음전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사회봉사는 전도의 교량 역할을 한다. 사회봉사가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셋째, 전도와 사회봉사는 동반자(partner)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실천을 병행하시었다. 양자는 상호 종속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동역하는 동반자 관계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영적 구원이 임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므로 ‘전도가 우선하다(Evangelism has a certain priority)’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90년에 발표된 ‘기독교 신앙과 경제에 관한 옥스퍼드 선언(The Oxford Declarati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은 하나님은 빈민들의 수호자이심을 천명하고 있다. “빈곤이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창조의 세계 가운데

어느 부분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빈곤은 인간 타락의 결과이다. 오늘날 인류의 20%는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하루하루 그들의 생존조차 의심스럽게 되고 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모욕적이고 통탄할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수호자이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흔히 탐욕으로부터 나온다.”¹⁵⁾

존 스타트(John Stott)는 그의 저서 ‘진정한 기독교(Authentic Christianity)’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분의 공의를 나타낸다. 바로 그 때문에 자선사업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의한 상황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의의 회생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격받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서 산적을 없애 버리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존 스타트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구분하면서, 사회봉사는 내용상 인간의 궁핍구제, 자선활동, 개인과 가족단위의 원조 등을 포함하는데 반해, 사회행동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고통의 원인 제거,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활동, 사회구조의 변화추구, 성서적 정의의 추구 등을 포함한다. 진정한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등이 주창한 사회복음(social gospel)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인 인간을 구원하는데 있는 것이

15) Oxford Conference,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Oxford Conference, 1990:1-13.

16) Stott, John R. W.,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정육배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 444-455.

아니라 사회의 유기체를 구원하는 데 있으며 지상 생활을 하늘나라의 생활에 조화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튜(S. Mathews)는 “기독교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비참한 일을 없애고 복리를 증진시킬 때 창조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후켄다이크(Hoekendijk)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교회의 벽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살름은 인간구원 이상의 내용이며 살름의 선포와 나눔과 실천을 선교로 볼 때 교회개혁이나 교파선전 형태의 재래식 선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너(E. Bruner)는 “기독교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눈감고 지배계층과 자본가들과 연합해 있을 때, 결국 교회 밖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과 이해가 아닌 종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붉은 혁명으로 확산된다. 이 운동의 여파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심하게 비난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만일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한 죄책을 함께 떠맡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만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V.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of persons)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역할은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인 궁핍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가치판단자.

가치판단자(value-judge)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해 이주노동자와 같은 궁핍한 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반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선악의 판단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쳐취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잠 14:21) 반면, 이방나그네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요, 동시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는 것이다.(눅18:22), 또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약4:17).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 성서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행동규범을 갖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이슈제기자

이슈제기자(issue-initiator)로서의 역할이다. 이슈란 어떤 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 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슈제기자란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합법적인 산업연수생과 다수의 불법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신이 처한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17)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8:174,179.

해결해주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감추면서 고통 가운데 저항없는 침묵으로 살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설령 이러한 문제를 사회에 알리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없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사회에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독교기관들은 전국에 약 120여개가 있으며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을 이슈화시키고,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10월을 이주노동자의 달로 선포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독교계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협의회의 주된 신앙고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종족과 나라와 정치적 배경을 초월하여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 특별히 노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권리이며 책임임을 믿으며, 국경과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존재 할 수 없음을 믿는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초월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선교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으로서 이주 노동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기회요,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작은 예수로서 섬김과 나눔의 현장임을 믿는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선교현장 다음과 같이 선교의 실천을 한다.

- 외국인 노동자는 선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 우리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차이는 인정 하나 모든 차별은 거부한다.
-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과 거주의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의지할 곳과 보호받을 곳이 없는 그들의 도피성을이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는 개인전도와 사회선교의 총체성을 가지며, 우리 의 욕구가 아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출발한다.¹⁸⁾

3.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자(service-provider)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기독교는 강도만나 심한 부상을 당해 거반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처를 치유해주었던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료선교단 등을 활용하여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향린교회 의료봉사단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와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재해,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위기상태에 처한 경우 이들이 취

18)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외국인노동자선교 신앙고백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1998.

업하여 노동에 종사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해주는 쉼터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기독교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하나는 상담서비스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주의 불화 등에 대한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발병, 송금, 사고, 병원비 문제 등에 대한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경우는 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하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한 노동상담, 폭행과 질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와 성화롱,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때로는 산업연수생, 연수업체, 송출기관 등 여러 관련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4.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이다.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서비스 사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전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원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기독교계, 정부, 일반사회 등에서 찾아낸 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연계(linkage)시켜 주고,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비위생적 인 주거환경 하에서 생활함에 따라 각종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상과 질병을 제때 치료해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독교는 이들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의료자원을 파악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의료기관에 연계 시켜주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기독교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착취당 하고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이를 구제받을 법을 몰라 극한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경우, 기독교는 이들에게 법률적인 원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권변호사나 노동상담소에 연계시켜 주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구인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독교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파악한 후 양자를 적절하게 연계(good job matching) 시켜주는 브로커(broker)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구인게시판과 구직게시판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필요 한 사업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연계하고 있다.¹⁹⁾

5. 프로그램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로서의 역할이다. 산업연수생과 같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현장에 산업인력부족이라는 노동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재계나 이 제도를 주관하는

19)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게시판, www.KoreanChinese.or.kr

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미시적인 생활상태나 욕구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는 정부나 기업들과는 달리 이들 이주노동자들과의 밀착상담 등을 통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불충족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얼마나 실현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들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 중심적인(migrant worker-centered)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정부나 경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자(social educator)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와 직장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행동규범이나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직장과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는 영성교육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과의 만남이 바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기관들은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충격과 같은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전통예법 역사 등을 소개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직업체활기관이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기관들은 산업체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체활훈련을 시킬 수 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산업체해를 입은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산재보험까지 적용받고 있으나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체활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체활훈련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이라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산재이주노동자들을 기독교기관 산하의 직업훈련기관들이 직업체활훈련을 실시하거나 이들도 직업체활훈련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옳은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차별적인 직업체활훈련대상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²⁰⁾

7. 재원조달자

재원조달자(fund raiser)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 교회의 십일조는 고아, 과부, 빈궁한 이방나그네, 유산이나 재산이 없는 목회자를 돋기 위해 사용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신14:29).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헌금도 이들의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부 기독교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일일장터를 열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걷기 모금(CROP Walk)’를 실시해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project 신청을 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20) 국가인권위원회, 직업체활훈련대상 외국인 배제는 차별, 한국경제신문, 2003.3.17.

8.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관리자(volunteer management)로서의 역할이다. 봉사는 기독교가 실천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봉사내용을 확인한 후,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독교는 우리들의 이웃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성경상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적, 교육적 또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들의 이웃 형제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자원봉사로 종종 나타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자원봉사관리조정자로서 기독교기관은 첫째,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자신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자원봉사연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²¹⁾ 기독교는 자원봉사사업에 관해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봉사회망자의 인적사항, 특기, 희망하는 봉사내용, 봉사가능시간 등을 파악한 후 이를 정보를 봉사회망자카드를 작성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해 보관한다. 기독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카드를 작성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해 보관한다. 신청은 봉사회망자나 봉사필요자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방문신청을 받거나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교회는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봉사회망자간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계 후 봉사가 적절히 잘 진행되고

21) 김기원, “자원봉사참여욕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0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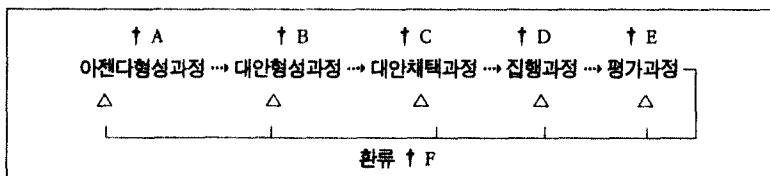
봉사자와 피봉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원만한 봉사가 은혜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셋째, 자원봉사실천사업이다. 기독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번역, 한글교실운영, 한국어교재 만드는 일, 문서화 작업, 설문조사작업,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 공단·병원 방문, 양방·한방 진료 등이 있다. 이미용 봉사나 의료봉사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비중있는 역할은 주로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9. 복지정책형성과정 개입자

복지정책형성과정 개입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젠다형성과정-대안형성과정-대안채택과정-집행과정-평가과정-환류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기독교는 역할을 할 수 있다.²²⁾

아젠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성서적으로 옳지 못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문제나 요구를 아젠다의 지위에 올리기 위한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아젠다문지기로서 비성서적인 이슈들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정책대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는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안



22) 송근원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35-60.

들이 비교분석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대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정책결정자들을 적극 설득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세속적 합리성 이외에 성서적인 정의가 반영되는 통전적인 대안채택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채택된 사회복지정책대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기독교는 정책대안이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은혜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감시자의 역할(watch dog)을 수행하여야 한다.

집행된 사회복지정책대안이 평가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정책집행결과를 통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세속적인 평가기준에서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정책대안의 집행결과가 성서적으로 합당하다면 기독교는 그 결과가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된 결과는 환류시킴으로써 향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데 활용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아젠다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A)

사회복지정책 아젠다형성과정에서 기독교는 아젠다형성자로서, 이슈제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사실발견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복지적 상황과 같이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객관적인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이것이 성서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문제해석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기관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이 국가나 사회공동체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문제해결요구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아젠다문지기로서의 역할이다. 아젠다문지기로서의 역할은 gatekeeper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문제나 요구가 아젠다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할 수 있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아젠다(agenda)는 체제아젠다(systemic agenda)와 제도아젠다(institutional agenda)로 나뉜다. 먼저 체제아젠다 진입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재의 정부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이다. 다음으로 제도아젠다 진입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권위있는 의사결정자가 문제에 대해 뚜렷하고도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분석되어지지만 결국 이슈제기자(issue-init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슈란 어떤 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 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슈제기자란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비복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사회에 알리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없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기독교의 이러한 역할들은 사회행동가(social actor)로서 그리고 의식집단(conscious group)으로서 수행되어질 수 있다.²³⁾

경우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사회복지아젠다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견제하는 아젠다문지기(gatekeeper)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 기독교는 몇 가

23) 빈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이슈제기자들로는 '기아이익집단(hunger interest group)'을 들 수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Hunger Web, Alan Shawn Feinstein World Hunger Program, Canadian Food for the Hungry, World Vision 24 Hour Famine, World Vision's 30 Hour Famine 등이 있다.

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이슈를 제기한 집단의 정통성이나 문제점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그 집단이 원하고 있는 이슈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면 성서적으로 그릇된 문제를 이슈화시키려는 집단자체를 불신시키기 위하여 그 집단을 악의 세력 또는 사탄의 집단 악마들이라고 직접 정의내리는 것이다. 또는 성서적으로 잘못된 이슈를 제기하는 집단의 지지근거를 삭감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나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거나 그 집단의 지도자를 아주노동자대책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회(adhocracy)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성서적으로 잘못된 이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부득불 그 이슈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거나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한 부서나 기관을 새로이 만들어 형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성서적으로 잘못된 이슈가 그 모습을 미화하기 위하여 성서적 가르침이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한 가르침이나 용어는 본래 기독교의 본질임을 일깨워 그들이 미화하고자하는 것들의 허상을 밝혀주는 것이다.

2) 사회복지대안형 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B)

문제나 요구가 권위있는 의사결정자의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책의제에 올라간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대안이 형성되고 비교분석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성서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노동자들의 쉼터와 같은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세워지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는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나 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현상을 사전에 저지하는 노력을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이,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실현가능

성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이 문화적 실현가능성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도록 청원을 한 바 있다. 또한, 가능만 하다면,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기독교계가 부담하겠다고 제의한다면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대안채택과정(↑C)

사회복지대안채택과정이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대안을 채택함에 있어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이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만족모형이 현실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합리성(rationality)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창의와 같은 초합리성(extrarationality) 그리고 감정과 같은 비합리성(irrationality)도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최적모델(optimizing model)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대안들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합리성(secular rationality)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영성적인 직관과 판단이 있기를 기도하여야 하며, 궁핍한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연민의 정이 정책대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작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기독교는 정책대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세속적 합리성 이외에 성서적인 정의가 반영되는 통전적인 대안채택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D)

사회복지정책집행이란 채택된 정책대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가는 목적지향적 과정인 동시에 서비스전달과정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이념간의 논쟁과 의견이 제기가 된다. 특히 채택된 정책대안이 집행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야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정책집행자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거나 행정상급자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통하여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이러한 압력집단은 저소득층이나 소수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채택된 정책대안이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비효율적이라거나 정책집행자들이 무능력하다거나 부패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은 정책대안이 집행되는 것을 비판한다. 때로는 채택된 정책대안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간헐적으로 중단시키거나 폐기시키려는 비집행(non-implementation)을 부추기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채택된 정책대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시키려고도 시도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책이 집행되는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에서 채택된 성서적으로 합당한 정책대안이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은혜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택된 정책대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감시자의 역할(watch dog)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환류(↑ E)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집행된 정책대안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된 결과는 정책이 전개되는 각 단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환류(feedback)시켜야 한다.

기독교는 주로 집행된 정책결과에 대한 외부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택된 정책대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동역자로서 참여하였다며, 즉 정부와 기독교가 연합사업으로 실시하였다면 내부평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독교가 행하는 정책평가는 통전적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반응성, 민주성, 합법성, 편의성 이전에 무엇보다 그 근본에 성서적 정의가 얼마나 구현되었는가를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속적인 평가기준에서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정책대안의 집행결과가 성서적으로 합당하다면 기독교는 그 결과가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된 결과는 환류시킴으로써 향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데 활용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6) 사례분석: 조선족교회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조선족교회의 역할

(1) 사례 : 불법체류조선족 동포 체류 연장

최근 불법체류자의 체류연장문제가 기독교계와 사회에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된 서울조선족교회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²⁴⁾

〈 서울 조선족교회 단식농성 해산 기자회견문 〉

3월 26일부터 시작된 서울조선족교회의 항의와 문제제기가 오늘 4월 16일까지 22일간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서경석목사님의 단식도 오늘로 22일째를 맞았고 조선족동포들의 집단단식도 5일째를 맞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반 플라자호텔에서 서경석목사와 김남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이 자리에서 조선족동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즉 빚도 깊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서 가야 한다는 문제를 법무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문제소식: 서울 조선족교회 단식농성 해산 기자회견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2002.

그리고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중국동포들의 출입국 절차개선 등 대책을 강구한다”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지금 당장 5년간 체류를 보장한다는 답변을 받으려면 다른 나라 노동자의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정부의 포괄적인 대책이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양해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소청심사를 위해 민간위원회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내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만큼 기준 위원회를 활용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법무부 측은 여권 등 신분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소지자들도 대사관의 접수확인증(여권신청 및 개신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확인을 의미함) 만으로도 일단 자진신고의 접수를 허용하겠다고 하여 모든 불법체류 조선족 동포 및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전부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서울조선족교회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교회 내에 <불법체류자의 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조선족동포들의 신고절차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불법체류자가 다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조선족 교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동포들이 빛진 채 추방당해서는 안되고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교회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황우여, 이호웅, 서상섭, 아주영, 김영진, 원철희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들에게 인도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서명작업이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하룻만에 27명의 의원이 서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답변이 나옴에 따라 이 서명작업은 일단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동포들의 집단단식 과정에서 이미 실신해서 병원에 입원한 한명의 입원환자를 포함해서 9명의 탈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서경석목사가 이출혈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족동포들이 합심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정부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조선족교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불법체류자, 특히 불법체류 조선족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빚도 갚고 돈도 벌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여러분은 이제 신고를 주저할 필요가 전연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신고를 하여 최소한 1년간의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6일

서울 조선족교회

(2) 사례분석: 불법체류조선족 동포와 관련된 정책형성과정에서 조선족교의 역할

1)아젠다 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조건 : 불법체류조선족 동포 추방사실 확인

문제 : 일방적 추방은 문제이므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인식

요구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추방조치 취소 및 인도적 조치 요구

불법체류자 1년내 추방반대 시민집회

국회의원 및 언론사와 공감대 형성해 정부에 요구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조선족문제에 온정적 대안정책 촉구

안전형성 : 법무부 김남일 출입국관리소장이 공식적으로 대책강구를 약속하도록 함

2)대안형성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 : 법무부와 협의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강구함.
- i) 5년간 합법적 체류를 보장
 - ii) 1년간 합법적 체류를 보장
 - iii) 여권등 신분증이 없어도 일단 자진신고 접수를 허용
 - iv) 불법체류자의 신고안내센터 설치
 - v) 이주노동자의 소청심사를 위한 민간위원회 설치
 - vi) 이주노동자의 소청심사를 위한 기존 위원회 활용

3) 대안채택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 : 법무부와 논의하여 형성된 대안 가운데 실현가능한 대안을 채택함.
- i) 모든 불법체류자가 1년동안 합법적 거주자격 취득할 수 있음
 - ii) 이주노동자의 소청심사를 위한 기존 위원회 활용
 - iii) 여권등 신분증이 없어도 일단 자진신고 접수를 허용
 - iv) 불법체류자의 신고안내센터 설치

4) 정책집행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 : 채택된 정책대안의 집행과정을 감시함.
- i) 채택된 정책대안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
 - ii) 인권침해 처리지연 부당한 중빙서류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및
 - iii) 서비스전달과정을 감시

5) 정책평가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 : 통전적 평가를 행함.
- i) 집행된 결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
 - ii) 성서적 정의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평가

6) 환류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

- : 평가 결과를 향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전략방향을 점검하고 기독교의 역할을 검토하는데 활용

VI. 결 론

최근 복지국가위기론에 따른 대안적 복지국가 모형이 제시가 되는 오늘 날 기독교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 직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서적 정의가 지상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역사를 이룩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하게 나타난 80년대 중·후반부터 불법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여권압류, 감금노동, 사업장내 폭행, 저임금, 질병,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조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유린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상태로 노동현장에 종사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는 궁핍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구제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입법 청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는 고용허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였으며, 정부도 최근에 불법체류이주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으로 고려 할 수 있는 것으로 1990년 12월 18일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의 내용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중진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서 의미있게 고려될 수 있다.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주노동자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대하였고,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여야 한다. 기독교는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방나그네를 환대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of persons)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가치판단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해 이주노동자와 같은 궁핍한 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반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선악의 판단자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정부의 정책아젠다의 지위에 오르도록 노력한다. 셋째,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원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기독교계, 정부, 일반사회 등에서 찾아낸 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연계시켜 주고,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자

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들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와 직장에 원만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규범이나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직장과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곱째, 재원조달자(fund raiser)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외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여덟째,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봉사내용을 확인한 후, 활용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복지정책형 성과정 개입자로서의 역할이다. 기독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형 성과정에 개입하여 성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궁핍한 이주노동자는 성경상에서 기독교가 돌보아주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의 이웃이다. 기독교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주노동자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대하였고,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상세계에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원회, 직업재활훈련대상 외국인 배제는 차별, *한국경제신문*, 2003.3.17.
2. 김기원, “자원봉사참여욕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0호, 1997.
3.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8:49-54, 174-179.
4. 김기원,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종교와 사회복지*, 한국종교계사회복지 대표자협의회, 2000.
5. 대한성서공회, 한영성경전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대한성서공회, 1987.
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문제소식: 서울 조선족교회 단식농성 해산 기자회견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2002.
7.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게시판, www.KoreanChinese.or.kr
8.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한울, 1992:35-48.
9. 석현호, 외국인노동자 4년간 노동실태조사, *한겨레신문*, 2003.6.20.
10. 송근원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35-60.
11. 유길상 &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이란주, 한국내 이주노동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부천외국인노동자 의 집*, 2002.
13. 정경준 & 정용관, 외국인근로자 20만명 내달 강제출국 면할 듯 -여야, 고용허가제 통과 합의, *동아일보*, 2003. 7. 3.
14.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외국인노동자선교 신앙고백문, 안산외국인노동 자센타, 1998.
15. Derry McKeever, Migrant worker rights adopted by UN, *Chatham-Kent Times*, 2002.12.17.
16. John Stott,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정옥배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 부*, 1997, 444-455.
17.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Struggle: Migrant Workers In Korea, OCAP, 2002.
18. Oxford Conference,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Oxford Conference, 1990:1-13.
19. Tony Evans, Church Social Ministry, <http://heritage/nov96/Evanshtml>

20. Tony Lane, Christian Thought, 김용국 역, 기독교사상사,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8:81-83, 515-519.
21.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the Human Right, 1990.

김기원 교수는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Dallas) 졸업

[Ph.D & M.A. in Political Economy : Social Policy]

경력 : 미국 University of Texas(Dallas) Research Assistant 역임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겸 편집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기독교사회복지학회 이사, 교회사회사업학회 편집위원장

현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 기독교사회복지론(저서), 사회복지조사론(저서), 사회복지법제론(저서),

공공부조론(저서)

한국사회복지의 선택(공저), 한국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공저)